

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36호, 2022.11.2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경부선 KTX-산천이 대전~김천구미구간 운행 중 차륜 파손 및 차축 탈락으로 정차한 사고(1.5)의 후속대책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시 설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륜의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진 해외 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목록 확대 (안 Part 3 차량용품 1.차륜 4.2)

- 균열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의 목록에 추가

나. 차륜의 잔류응력 최대값 설정 (안 Part 3 차량용품 1.차륜 4.2)

- 차륜의 제작시 발생하는 압축 잔류응력의 최대값을 추가로 설정하고,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

다. 마모 확인을 위한 홈의 형상 신설 (안 Part 3 차량용품 1.차륜 4.3)

- 마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홈의 형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운행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604, 4608 / 팩스 : 044-201-5672